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5
----------	-----

제출연월일 : 2006. 1.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안 제12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안 제14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 라. 연가일수의 탄력적 운용(안 제18조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휴가 일수 축소 조정(안 제22조제1항 별표 2)**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적용 시기 조정(부칙 제3항)**

학교근무 직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특별휴가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함

개정조례안 : 불입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입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입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교육감”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동조제6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동조제7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령」”으로, 동조제6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동항제2호중 “정부표창 규정”을 “「정부표창 규정」”으로,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 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22조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1.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가. 제1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p>	<p>제14조(-----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 ----- ----- -----</p>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  
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  
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다.

라. 제15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  
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교육감은 토요  
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교육감은 공  
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  
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신설)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제1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  
일) 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  
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  
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  
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기관의  
장-----  
-----  
-----.

②~⑤ (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  
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  
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p>제22조(특별휴가) ①~② (생략)</p> <p>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p> <p>④~⑤ (생략)</p> <p>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li> <li>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li> <li>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li> <li>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li> </ol> <p>⑦ 교육감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 1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⑧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p>	<p>할 수 있다.</p> <p>제22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p> <p>(삭제)</p> <p>(삭제)</p>
--	--

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  
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  
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생략)

제2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 2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	7
	자녀	1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삭제)	(삭제)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회갑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삭제)	(삭제)
출산	배우자	3	출산	-----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사망	-----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삭제)	(삭제)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탈상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 외조부모	1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삭제)	(삭제)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 고 :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